

화순군리명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24

다. 상정일자 : 2003. 1. 24

(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규문

나. 개정사유

- 화순읍 과대마을 분구계획에 의한 화순읍 대리6구중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리 지번 2필지를 대리6구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리 관할구역 조정

- 화순읍 대리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리 토지 2필지 (삼천리 640-1, 640-7)를 화순읍 대리 구역으로 편입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대마을 분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화순읍 대리6구에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리 토지 2필지를 편입시키는 조례임.
별다른 의견없음.
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부 : 화순군리명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표 화순읍 구역란중 "산천리 일원"을 "삼천리 일원(640-1, 640-7번지 제외)"으로 하고 "대리 일원"을 "대리 일원(삼천리 640-1, 640번지 포함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종래 삼천리 일원	종래 삼천리 일원(640-1, 640-7번지 제외)
종래 대 리 일원	종래 대리 일원(삼천리 640-1, 640-7번지 포함)